■ 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8호서식] <개정 2019. 6. 12.>

[ ] 폐자동차재활용업 [ ] 등 록 신청서
[ ] 폐가스류처리업 [ ] 변경등록
[ ] 변 경 신고서

신청인 (신고인)	상 호	전화번호
	주 소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사업자등록번호

신청(신고)업종	[ ] 파쇄재활용업 [ ] 파쇄잔재물재활용업 [ ] 폐가스류처리업

시설·장비 설치내용

시설·장비명	규격(능력)	소 재 지	재활용 방법

변 경 사 항	변 경 전	변 경 후
변 경 사 유		

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, 제32조의2제1항·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·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신고인) (서명 또는 인)

한국환경공단 귀하

첨부서류 (등록신청의 경우)	1.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2. 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7의3에 따른 등록 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(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) 3. 시설설치 명세서 및 재활용·처리공정도 4. 수집·운반·재활용·처리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5. 재활용시설 운전계획서	수수료 없 음
첨부서류 (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)	변경등록·변경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	
담당자 확인사항 (등록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 2. 사업자등록증명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(신고서) 작성	→ 접 수	→ 검 토 (적정 여부 확인)	→ 실태조사	→ 결 재	→ 적합여부 통보 (변경신고 처리)
신청인(신고인)	처 리 기 관 (한국환경공단)	처 리 기 관 (한국환경공단)	처 리 기 관 (한국환경공단)	처 리 기 관 (한국환경공단)	신청인(신고인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